

수출통관 및 FTA활용방안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I. 수출통관

1. 수출통관

용어의 정의

1) 수출 [법 제2조제2호]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 내국물품 [법 제2조제4호]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등

3) 통관 [법 제2조 제12호]

-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1. 수출통관

통관의 대상 : 물품(Goods)

유체물
(전기 에너지 제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이동수반
(국내 → 외국)



1. 수출통관

수출입의 금지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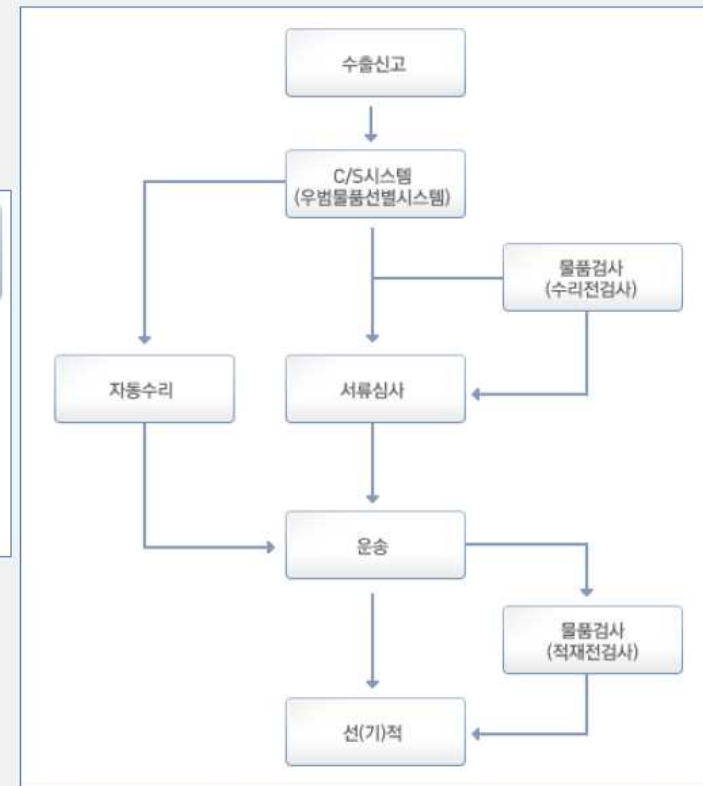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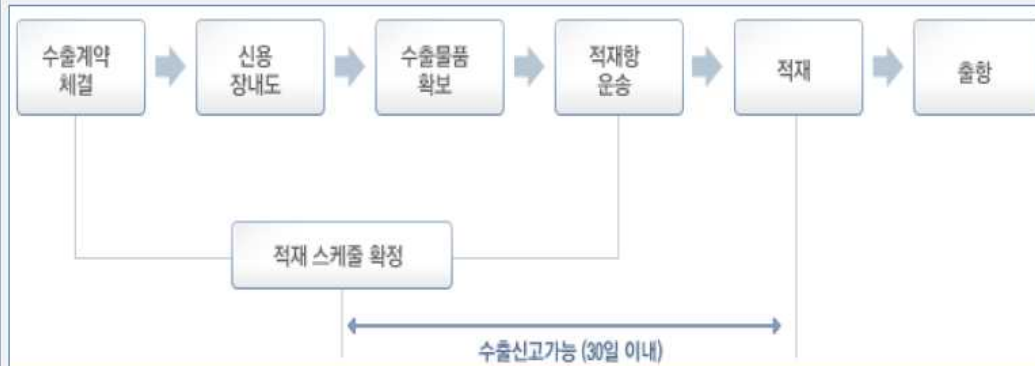
-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의하여 개별 법령에서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물품이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이 허용되는 물품과는 차이가 있음

2) 대상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1. 수출통관

수출통관 흐름도



I. 수출통관

수출신고

1) 수출신고 시기

-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전까지 신고가 원칙
- 자동차 운반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당해물품을 적재(선적)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 가능

2) 신고인

- 관세사(통관취급법인 포함)
- 수출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

3) 수출신고의 기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신고
 - 수출신고서 1건의 분할선적 가능, 여러 건의 신고서를 통합하여 선적도 가능

1. 수출통관

수출신고서 처리방법

4) 수출신고서는 자동수리, 서류심사, 검사후 수리 방식으로 처리

- **[자동수리]** 서류제출대상,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
화면심사는 수출신고후 세관 심사직원이 심사를 하지 않으면 일정시간 경과후 자동
으로 수리되어 자동수리에 포함시키고 있음
- **[서류심사]** 수출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한 물품[전산망 연계 제외], 위약물품의 수출,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된 물품의 수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 **[검사후 수리]** 수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또는 수작업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 검사후 수리

I. 수출통관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1) 수출신고

- 원칙 : 전자문서로 신고(P/L)
- 예외 : 전자문서 신고 + 신고서류 제출
 - 수출요건 확인대상물품 중 전산망 미연계 물품
 - 재수출조건부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수출
 - 감면, 환급 등을 위하여 수출자가 서류제출로 신고한 물품
 - 전산시스템에서 서류제출로 선별한 신고물품

2) 수출신고 효력발생시점

-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

I. 수출통관

수출신고의 수리

1) 신고서 처리방법

-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 심사대상은 심사후 즉시 수리
-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2) 신고자료의 보관

- 신고인은 P/L신고건이 수리된 경우 수출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당해 수출신고수리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수출신고필증
 -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관련 자료
- ※ **보세화물 및 보세운송 등에 관한 자료(2년)**

I. 수출통관

수출물품의 적재

1) 수출물품 적재 관리

- 수출신고 수리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하여야 함
-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재기간 내에 “**적재기간연장 승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수리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

※ 부가가치세법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를 적재일로 규정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사실만으로 동 물품에 대한 영세율(매출액 * 0) 적용은 不可

2) 수출신고수리 취소

- 세관장은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원인 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수출신고 수리 취소 가능

II . FTA 개요

1. FTA 개요

FTA의 개념

[정의] :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에 있어 관세와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 (FTA 관세특례법) GATT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

1. FTA 개요

FTA 효과

- 협정국간 무역장벽 축소, 신규무역창출
-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촉진
- 기업투자증가 및 고용촉진
- ※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 증대

1. FTA 개요



협정은 분과별로 이슈화되는 내용이 서로 다르며 이를 조율하는 협상을 진행함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FTA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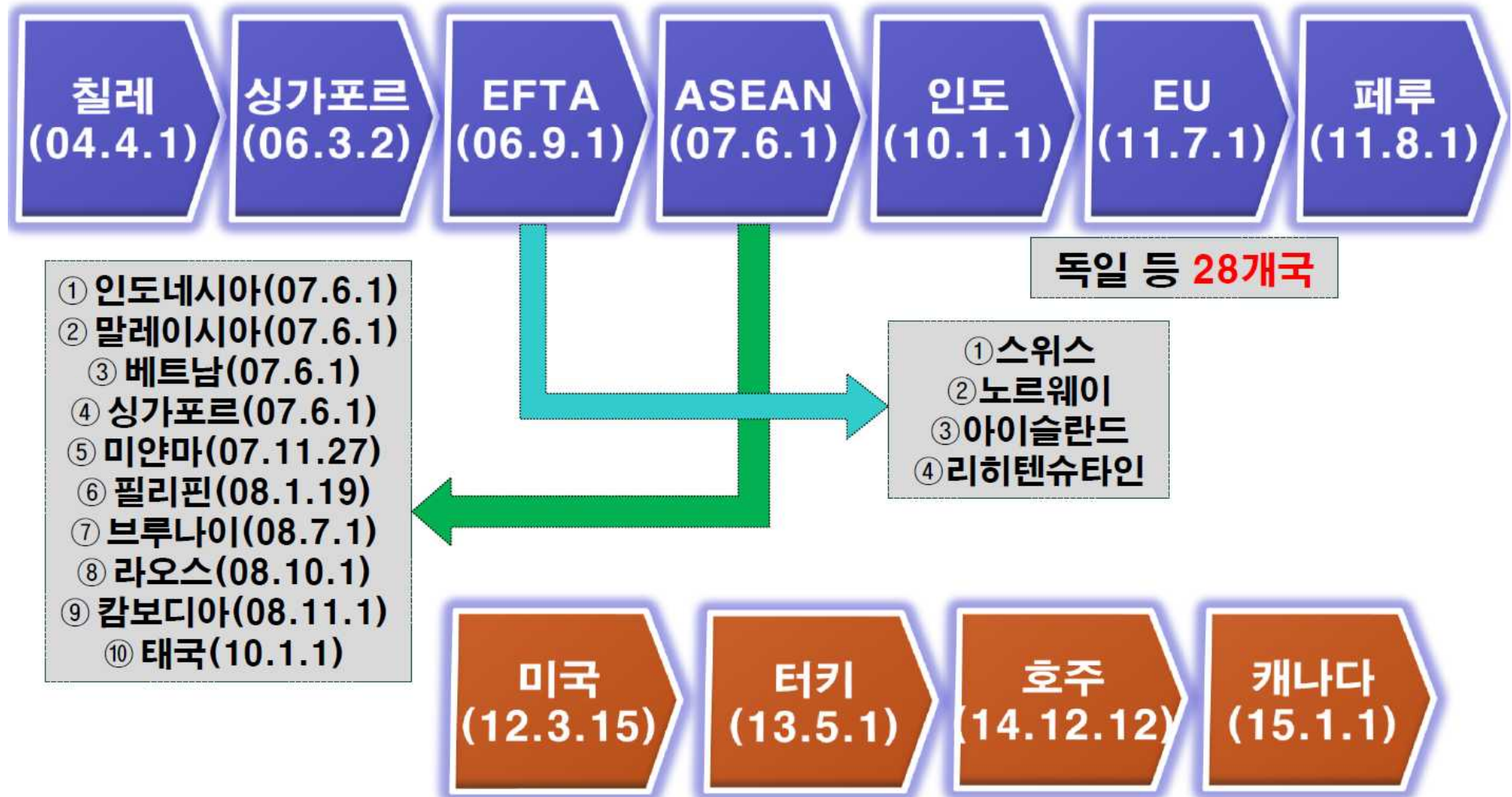
- 동시다발적 FTA 추진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FT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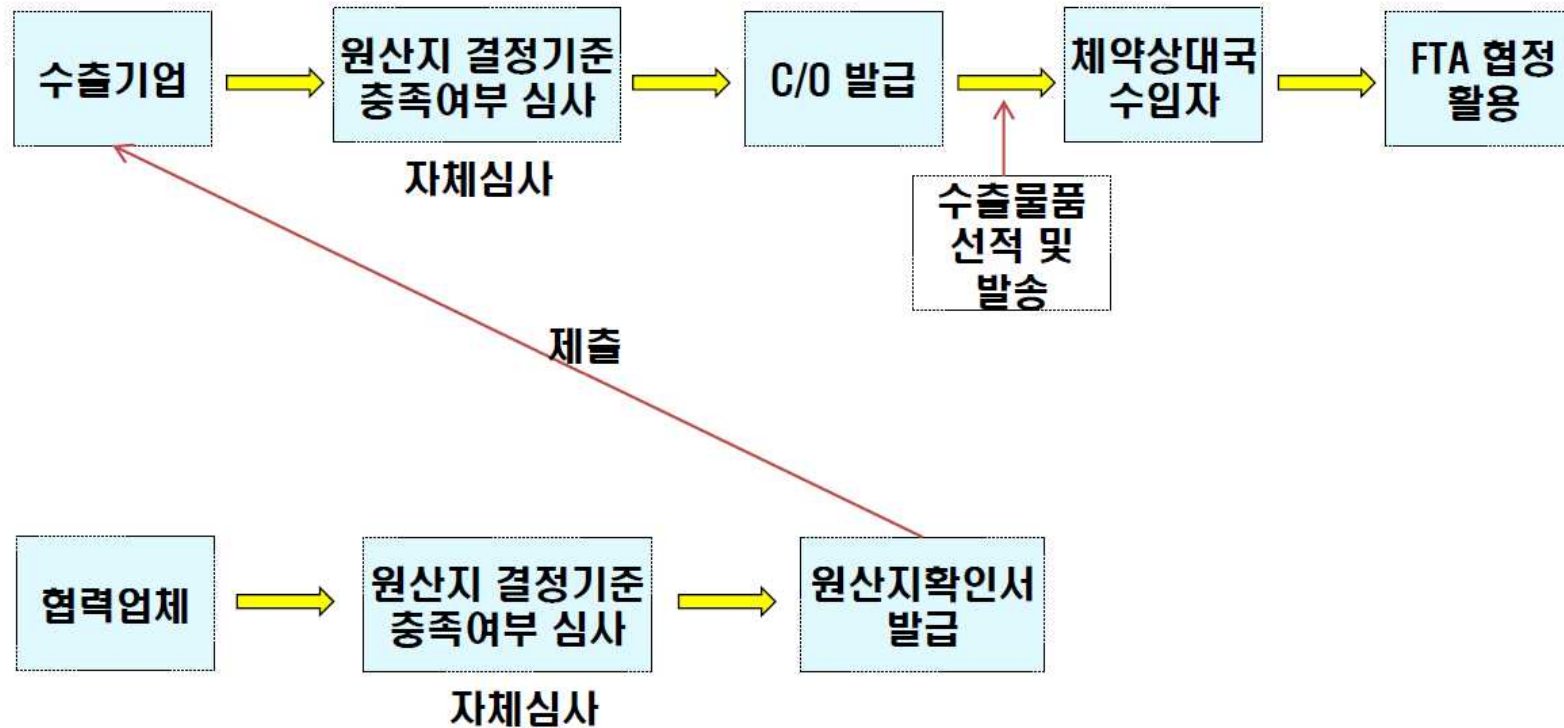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1건 49개국)	칠레	04.4.1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6.3.2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06.9.1 발효	유럽시장의 교두보
	ASEAN(10개국)	07.6.1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13년 기준)
	인도	10.1.1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11.7.1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13.5.1 발효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14.12.12 발효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15.1.1 발효	북미 선진시장
타결 (4건 4개국)	콜롬비아	14.4.29 국회비준 의결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뉴질랜드	15.3.23 정식 서명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15.5.5 정식 서명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14.12월 기준)
	중국	15.6.1 정식 서명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4년 기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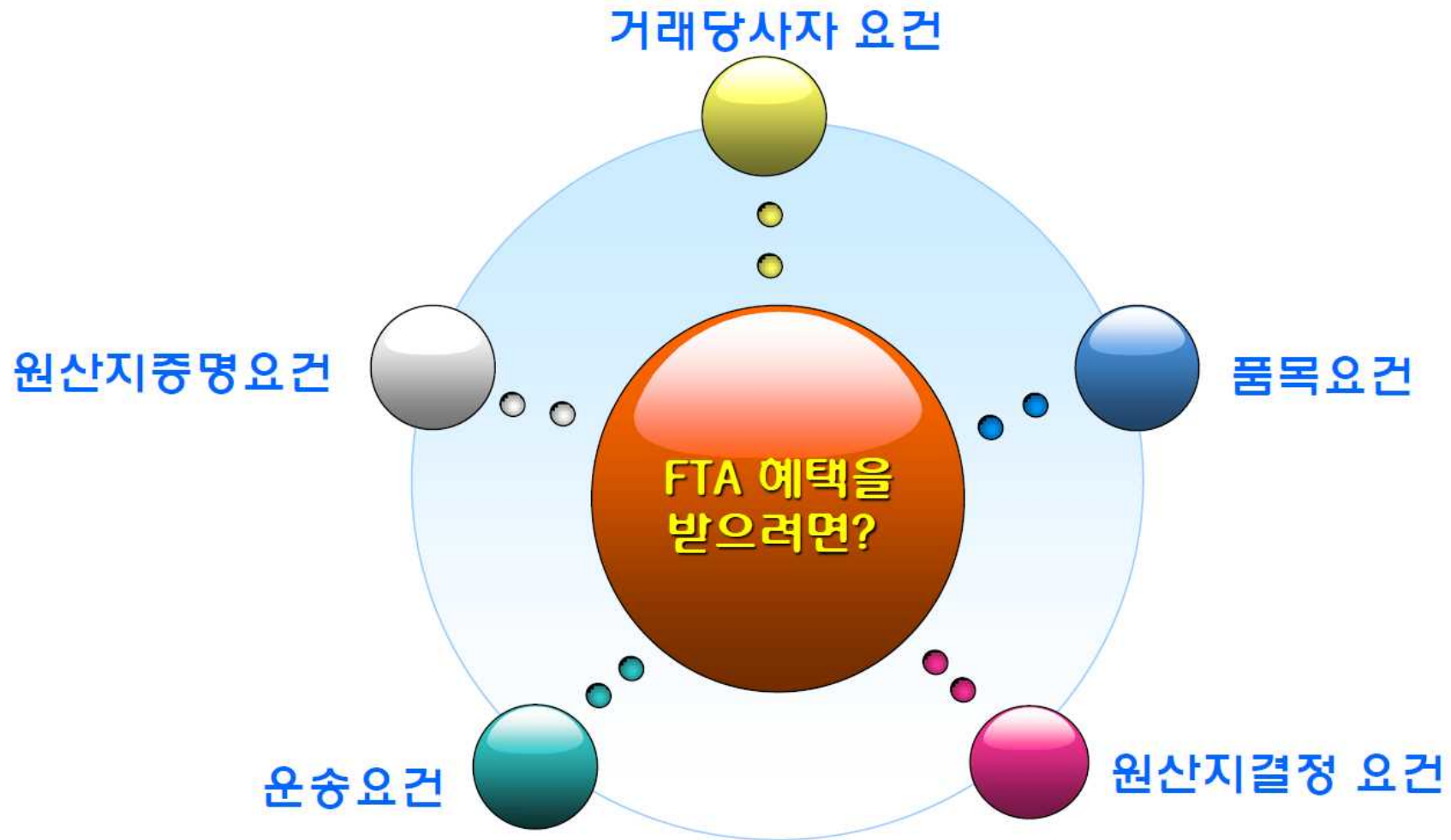
III. FTA 특혜 관세 적용조건

1. 기업 FTA 활용흐름도(수출물품)



※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품, 최종제품 생산

2. FTA 특혜관세 적용조건_개괄



3. 거래당사자 요건

1) 수출자

① 수출 계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자

☞ 제3국에 소재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수출자가 될 수 없음

☞ 통상적인 거래계약 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임

② 원산지 증명 또는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지는 자

③ 원산지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

2) 수입자

① 수입 계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

②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지는 자

③ 원산지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

4. 품목요건

특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품목도 협정별 · 국가별 · 연도별로 세율이 상이

품명 (품목번호)	연도별	적용 대상국별 세율_수입물품 기준			
		EU	미국	인도	기본세율 (할당관세)
농약원제 (3808.92)	2012	1.5%	4.3%	2.6%	2%(1%)
	2013	1%	2.1%	1.3%	2%(1%)
	2014	0.5%	0%	0%	2%(1%)
	2015	0%	0%	0%	2%(1%)

5. 원산지증명 요건

원산지 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말함.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특별히 정한 서식 사용

[상세내용 後 述]

6. 운송 요건_직접운송원칙

■ (원칙)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직접운송 되는 경우 특혜부여

■ (목적) 역내운송업 이용 촉진, 운송과정에서 비체약국산 물품이 체약국 원산지물품으로 둔갑되는 행위 방지

☞ 생산공정 수행장소나 재료의 조달처와는 무관하게 제조가 완료된 물품의 운송 경로에 따라 원산지물품 여부가 좌우

■ (예외)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비당사국 세관의 감시하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에 필요한 작업(하역, 재선적, 탁송품 분리 등)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환적(경유), 일시보관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특혜부여

7. 원산지 결정요건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 원칙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대체가능물품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	최소기준 세트물품 포장 · 용기 중간재 간접재료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 선택기준		

8.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예

된장 (2103.90) PSR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싱가포르	CTH + RVC45%
페루	CTH or RVC45%
EU/칠레/ EFTA/미국/터키	CTH
인도	CTH + RVC40%
호주	CTSH
캐나다	CC (제12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아세안	CTH or RVC40%

8.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예

된장 (2103.90) BOM

품명	HS Code	원산지	구매단가	비고
콩	1201.90	역내산	420원	
정제수	2201.90	역내산	30원	
겨자가루	2103.30	역외산	200원	
알코올	2207.20	역외산	120원	
소금	2501.00	역내산	80원	

※ 완제품(된장) 가격 : 1,000원(EXW), 1,020원(FOB)

8.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예

된장 (2103.90) 한-아세안 FTA 충족 여부

① 세번변경기준(CTH)

품명	원산지	HS Code	CTH 충족여부	비고
콩	역내산		해당없음	
정제수	역내산		해당없음	
겨자가루	역외산	2103.30	불충족	
알코올	역외산	2207.20	충족	
소금	역내산		해당없음	

- 겨자가루(2103.30)는 된장(2103.90)과 HS 4단위(호)가 동일하므로 CTH 기준 불충족 → 겨자가루는 역내산 사용

8.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예

된장 (2103.90) 한-아세안 FTA 충족 여부

② 부가가치기준(RVC40%)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상품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 가격(VNM)}}{\text{상품가격(FOB)}} \times 100$$

$$= \frac{1,020 - 320}{1,020} \times 100 = 68.6 \%$$

- 된장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68.6 %로 원산지결정기준인 40%이상을 초과하여 한-아세안 원산지기준을 충족